

2022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이수 안내

1. 총 이수 시간: 5학기까지 60시간 이상 이수(4학기 이내에 교육봉사활동 이수를 권장함)
2. 인정기간: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이후부터 해당 학기 종료 1주일 전까지
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성적을 인정함.
3. 제출서류
 - 가. 봉사활동 전: 교육봉사활동 신청서(붙임 1 참조)
 - 나. 봉사활동 후
 - 1) 교육봉사활동 확인서(붙임 2 참조)
 - 2) 교육봉사일지(붙임 3 참조)
 - 3) 교육봉사활동 설문지(붙임 4 참조)
 - 4) 교육봉사 자기성찰 보고서
 - 가) 분량 및 형식: 자유
 - 나) 작성 내용: 교육봉사 활동을 통한 자기 성찰의 경험 기술
4. 제출처: 대학원교학팀(대학본부 J417)
5. 이수방법
 - 가. 봉사활동 2주전 까지 대학원교학팀에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봉사기관의 적합여부를 승인 받은 후 봉사활동을 시작함.
 - 나. 교육봉사활동 기간 중에 교육봉사일지를 작성함.
 - 교육봉사일지는 봉사활동을 수행할 때마다 작성
 - 봉사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되는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추가 제출 가능
 - 다. 교육대학원 재학 중 60시간 이상을 학기나 방학을 이용하여 이수
 - 라. 해당 학기 중 총 60시간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60시간 이수 후에 '교육봉사활동' 교과목 수강 신청
 - 마. 60시간 이수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, 교육봉사일지, 교육봉사활동 설문지 및 교육봉사 자기성찰보고서를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
 - 바. 대학원교학팀에서는 총 60시간 이수 및 수강신청 확인후 학기말에 성적 처리함.
 - 사. 유의사항
 - 1) 사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봉사를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
→ 성적 "F"처리
 - 2) 교과목에 배정된 수업일(토)에 별도의 수업은 진행하지 않음.
6. 교육봉사 기관 선정
 - 가.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: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(외국인 학교 제외)
 - 나. 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에 등록된 기관
 - 다.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
 - 1) 시·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시·도청,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관
 - 2)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의 교육봉사는 시,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시도청, 구청의 기관장이 인증(봉사활동확인서 발급)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
 - 3) 비영리기관은 비영리기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
7. 교육봉사 인정 활동

가. 교과목지도

나. 특기·적성지도(체육, 미술, 컴퓨터 등)

다. 학습부진아지도

라. 멘토링

마.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경우 아래 봉사프로그램 인정

- 1) 교과목학습 지도
- 2) 특기적성 지도
- 3)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
- 4) 초등 돌봄교실
- 5)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
- 6) 체험학습지원

8. 교육봉사 인정 불가 활동

가.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기간 중 실습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

나. 학교 도서관 책정리 등 사서업무, 간식지도, 급식지도, 야간자율학습감독, 교무 보조 등

9. 문의처: 대학원교학팀(교육대학원, 02-2287-5032)

- 붙임 1.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1부.
2.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.
3. 교육봉사일지 1부.
4. 교육봉사활동 설문지 1부. 끝.